

재해에 대비한 시의 시책과 지원제도

시유건축물의 내진진단·개수

피난소가 되는 학교나 시민체육관 등 방재상 중요한 공공시설이나 상하수도시설 등의 내진진단 개수공사를 실시합니다.



비상용품의 비축

피난생활에 필요한 비상용품물을 비축합니다.

비상용품물

비상용 음료수 용기/재해용 비축수/음료수/식량/고령자를 위한 음식/분유/포유병/모포/기저귀/생리용품/구급용품/간이 화장실



구조용 기자재의 배치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기자재를 전 시립초등학교, 파출소, 소방분단에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구조용 기자재

로프/삽/곡괭이/끌/툽/유압잭/망치/펜치



초동체제의 정비

재해시에는 시 직원의 근무시간 외라도 피해조사나 응급대처를 실시하는 직원의 비상배치를 실시합니다.

지진 발생시

- 진도 5약 : 약 650명의 직원이 출동합니다.
- 진도 5강 이상 : 전직원이 출동합니다.

풍수해 발생시

경보 발령 시 직원이 출근하여 재해대응 부서를 중심으로 시내경비와 응급/복구대책 준비로 들어갑니다.

《긴급방재요원》

사전에 지명된 약200명의 직원이 전시립초등학교등에 모여 피해조사등을 실시합니다.

시의 지원제도

가구 등의 전도방지기구 설치비용의 보조

대상세대	보조한도액		보조방법	문의처
	시민세 비과세세대	생활보호 수급세대		
시민세 비과세세대 또는, 생활보호 수급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세대	(1) 65세이상의 고령자만 있는 세대로서, 개호보호에서 지원·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고령자가 있는 세대	설치비 5,000엔 한도로 보조 설치비 5,000엔과 재료비 5,000엔 한도로 보조	보조가 결정된 후, 시가 지정하는 업자가 설치를 합니다. (옷장이나 식기선반, 책장, 텔레비전, 냉장고 등 합계 5대까지)	○ 복지부 고령복지실 ○ 종합복지회관 ○ 센리뉴타운지역 포괄지원센터 ○ 우치훈마치지역 보건복지센터 ○ 이노코다니지역 보건복지센터
	(2) 중도장애자만 있는 세대			○ 복지부 장애복지실 ○ 우치훈마치지역 보건복지센터 ○ 이노코다니지역 보건복지센터
	(3) 중도장애자와 65세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된 세대			

내진진단이나 내진개수설계, 개수공사의 보조

시에서는, 신내진기준이 시행되기 전 (소화56년 (1981년) 5월 31일 이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진단이나 내진개수설계, 개수공사의 보조를 실시합니다. 단, 내진진단이나 내진개수설계, 개수공사를 하기 전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시청 주택정책실로 신청·문의해 주십시오.

■ 내진진단보조제도 대상▶개인·법인·관리조항

대상건축물	보조액·한도액
단독주택·타운하우스·공동주택 (병용주택 포함)	목조: 내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9/10와 4만5천엔×거주호수 중에서 낮은 쪽의 액수로 하며, 연면적×천엔/㎡를 한도로 한다.
	비목조: 내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1/2과 2만5천엔×거주호수 중에서 낮은 쪽의 액수로 하며, 100만엔을 한도로 한다.
병원, 마트, 극장 등의 특정 건축물 (주택 제외)	내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1/2로 하며, 100만엔을 한도로 한다.

자세한 것은

도시계획부 개발심사실

■ 내진개수설계보조제도

대상주택	민간목조주택에 있어서 건축기준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 (임대는 제외)
대상액	상한 10만엔

■ 내진개수보조제도

대상주택	민간목조주택에 있어서 건축기준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 (임대는 제외)
대상자	보조대상 민간목조주택의 소유자 (법인 제외)로서 합계 소득금액이 1,200만엔 이하인 사람.
대상액	상한 40 (특정세대는 60) 만엔.

※내진개수설계보조제도 및 내진개수보조제도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이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상담해 주십시오.